

12. 산림법시행규칙중개정령

농림부령 제1,323호 1999. 4. 19.

개 정 이 유

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림의 면적요건을 완화하고, 규모가 경미한 산림의 벌채는 신고없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한편, 산림법시행령의 개정(1999. 2. 26, 대통령령 제16126호)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주 요 내 용

- 가. 국·공유림의 경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을 종전에는 100헥타르이상으로 하던 것을 50헥타르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의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제27조제3항).
-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을 휴양림조성자가 정하여 이를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앞으로는 휴양림조성자가 자율적으로 이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제31조제3항)
- 다.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시설에 산림의 형질변경없이 설치가 가능한 석도·궤도법에 의한 외줄 궤도시설을 추가함(제60조제1

항제10호)

- 라. 비상재해복구를 위하여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·군수의 재해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의 불편을 완화함(제64조).
- 마. 육림작업중 발생한 임산물에서 가지·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앞으로는 신고없이 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(현행 제94조제1항제5호 삭제).
- 바.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한 지장목의 벌채 등 규모가 경미한 산림의 벌채는 신고없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(제94조제2항)
- 사. 채석업자는 매분기말의 총생산 및 판매실적을 관할 시장·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채석업자의 편의를 도모함(현행 제97조의3 삭제)

※ 본문은 생략함

주택회보